

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145호

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0조1호 본문 중 “시 소유의 토지(이하 ‘시유지’라 한다)의”를 “시유지(일단의 토지를 말한다.)의”로 하고 “해당 시유지만으로는”을 “시유지만으로는”으로, “맞닿은 사유 토지의”를 “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청사를 신축할 때에는”을 “청사·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,”로 한다.

제44조제2항 “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44조제3항 “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.”를 “청사 등 공용·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별표의 내용 중 1호 가목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, “나. 부속공간 면적”을 “다. 부속공간 면적”으로, “다. 설비관계 면적”을 “라. 설비관계 면적”으로, “라. 공용면적”을 “마. 공용면적”으로 하고, 중복된 단위는 삭제한다.

별표의 4호 표 안의 실명 중 “장애자용 화장실”을 “장애인용 화장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(생략)</p> <p>1. <u>시 소유 토지(이하 “시유지”라 한다)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u></p> <p>제44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<u>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.</u></p>	<p>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(생략)</p> <p>1. <u>시유지(일단의 토지를 말한다.)의----- -----시유지만으로는----- -----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-----</u></p> <p>제44조(청사 등의 설계) ① <u>청사·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·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u>③ 청사 등 공용·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.</u></p>

별표

1.본청

가. 직무관련 1인당 면적

구분 기관별	기관장 실	부기관 장실	실·국 장실	실·과 장실	담당	직원
		(생략)				

나.본청 청사 기준 면적

(단위 : m²)

구분	기준면적	비고
인구 10만 미만	11,893m ²	
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	13,965m ²	
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	17,759m ²	
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	18,907m ²	
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	19,098m ²	
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	20,214m ²	
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	21,968m ²	
인구 100만 이상	22,319m ²	

※ 비고
- (생략)

나. 부속공간 면적

(단위 : m²)

실명	설계기준					비고
회의실 (사용인원)	24명미 만	25~49명	50~99명	100~149 명	150~199	(생략)
	(생략)					
상황실	2.64 × (과장급이상 수 + 동장 수)					
	(생략)					

별표

1.-----

가. -----

구분 기관별	(생략)			팀장	직원
	(생략)				

나.-----

구분	기준면적	비고
	11,893	
(생략)	13,965	
	17,759	
	18,907	
	19,098	
	20,214	
	21,968	
	22,319	

※ 비고(생략)

다. 부속공간 면적

<삭제>

실명	설계기준					비고
회의실 (사용인원)					150~199명	(생략)
	(생략)					
상황실	2.64 m ² -----					
	(생략)					

다. 설비관계 면적

(단위 : m²)

실 명		설 계 기 준		
공 조 기계실				
충장비 실	사무공간	500m ²	800m ²	1,000m ²
	충장비실	6.6m ²	8.4m ²	10.2m ²
주장비 실	사무공간			
	주장비실			

라. 공용면적 : [(직무면적+부속공간면적
+설비관계면적) × 30~40%]

2. 의회 청사

가.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

(단위:m²)

구 분	실 명	면 적 기 준	비 고
		(생략)	

나. 의회청사 기준 면적

(단위 : m²)

라. 설비관계 면적

실 명		설 계 기 준		
공 조 기계실				
충장비 실	사무공간	500	800	1,000
	충장비실	6.6	8.4	10.2
주장비 실	사무공간			
	주장비실			

마. 공용면적 -----

2. -----

가. -----

<삭제>

구 분	실 명	면 적 기 준	비 고
		(생략)	

나. -----

구분	기준면적	비 고
인구 10만 미만	1,853㎡	
인구 10만 이상 20만 미만	2,257㎡	
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	3,351㎡	
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	3,429㎡	
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	4,713㎡	
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	4,851㎡	
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	6,209㎡	
인구 100만 이상	6,597㎡	

※ 비고
- (생략)

4. 보건소

구 분	실 명	면 적 기 준	
		군보건소	통합시 보건소
진 료 활 동	a		
		장애자용 화장실	4.86

구분	기준면적	비 고
	1,853	
생략	2,257	
	3,351	
	3,429	
	4,713	
	4,851	
	6,209	
	6,597	

※ 비고
- (생략)

4. -----

구 분	실 명	면 적 기 준	
		군보건소	통합시보 건소
진 료 활 동	a	(생략)	
		장애인용 화장실	(생략)